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4차)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pbanc/622>)
- 사업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바랍니다.
 -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경우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권장**합니다.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집적지 내 제조 소공인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원규모:** 총 2개 지원사업, 5개사 내외 (중복지원 가능)
- **지원자격:**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
 -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 주업종이 **C26, C28, C29**에 해당하는 소공인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연도의 다음해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함.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제외대상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 고용노동부 임금 등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등재된 사업자
중복지원	○ 당해연도 '용인시산업진흥원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내 사업 5개 이상 선정 기업 ※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별첨) 참고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성 여부는 진흥원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유관기관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세금채납	○ 국세, 지방세, 세외 수입 채납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부도/휴·폐업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서류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기타 관련 법령, 신청자격, 진흥원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되, 최종 선정 시점 또는 협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지원 불가)

세부사업	지원금액	지원규모	세부내용	지원한도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최대 300만원	2개사 내외	○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비용 지원 (해외 지원 불가) ○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및 공인시험성적비용 지원 - KOLAS 인정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 인정(knab.go.kr 검색), 단순 민간 컨설팅 비용 불인정 ※ 2026년 2월 1일~협약기간 내 완료 건 소급 지원 가능	중복 지원 가능
소공인 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3개사 내외	○ 키워드, SNS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카탈로그, 브로셔, 리플렛, 홍보 영상 등) ○ 홈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신규 구축, 고도화) ※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기간이 약 17일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제작 및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여야 함.	

※ 인증 및 산업재산권(IP)와 마케팅 지원 중복 지원 가능

※ 사업 수행은 자체 수행이 아닌 국내 대행업체(외주)를 통해 수행(제작)해야만 함.

※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통합 지원사업 1,2,3차 선정기업은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9. 28.(월) 17:00까지**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 신청 권장
- 신청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접수 불가(평가 제외)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 신청 링크(<https://www.sbiz24.kr/#/pbanc/622>) 접속 후 세부사업별 해당 공고 신청

- 사업신청을 위해 사전에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 소상공인24 공고 검색방법: 소상공인24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검색창에 '용인' 검색 → [용인 영덕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모집 공고] 클릭 → 페이지 최하단까지 스크롤 → 해당 지원사업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세부사업별 공고가 각각 별도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공고를 통해 각각 신청 및 접수해야 함

- 신청 시 해당 세부사업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공고와 신청서의 세부사업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 예시: 소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소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에서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첨부해야 함, 다른 세부사업(인증 및 산업재산권 등) 신청서를 첨부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사업 관련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13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콜센터	1644-5302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선정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서면평가를 원칙으로하되,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 우선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목표, 지원금액, 지원범위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후 기업 실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등을 진행한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선정기업 통보
- 최초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은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사업포기·탈락·실패, 잔여 예산 발생 시에는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잔여예산 규모에 따라 기업 선정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기준

- 선정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점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점
총점		100점

-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 가점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 증빙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구분		점수	비고
가점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1점	진흥원 입주계약서 제출 필수 (※ 비상주 기업은 가점 제외)
	여성기업	+1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용인시 인증서 제출 필수 ※ 중복 적용 불가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해당 기간이 공고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가점 인정(입주계약서, 여성기업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5 추진절차

□ 추진절차 및 일정

1.신청접수 • 지원사업 신청접수 (소상공인24) 신청기간	▶	2. 기업선정 • 선정평가(서류평가) 10월 초	▶	3. 기업실사 • 기업 현장실사 (대면/비대면) 10월 초	▶	4. 선정통보 • 최종 선정기업 통보 10월 초
5. 협약체결 • 협약체결 (전자/대면 체결) 10월 초	▶	6. 사업수행 • 사업(과업) 수행 (약 2주) 협약체결일~협약종료일	▶	7. 완료평가* • 완료보고서 접수 • 완료평가 진행 10월 말	▶	8. 지원금 지급 • 완료기업 대상 지원금 후지급 10월 말~11월 초

※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사업은 인증서 등의 사업 결과물과 완료보고서 제출로 완료평가를 대체함

※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후지급(100%)

-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 증빙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사업비를 대행업체에 지급 (기업→대행업체)
 -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집행 및 증빙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단,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2월 ~ 협약기간 내 집행완료 건 지원 가능)
- 사업 수행 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지출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 사업 완료평가 실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후지급

○ 지급조건

-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평가 결과가 '적정'일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 완료평가 결과가 '실패'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사업완료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확정 금액에 따라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
 - ※ 기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 및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지원금 지급 불가
-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직접 인건비, 여비 등의 항목은 지원 불가

○ 지급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무단 변경 금지
 -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선정평가에서 제외됨
 - 사전에 제작한 과업이나 결과물로 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지원(신청)자격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대행업체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등 공고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이메일/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함. 이에 따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진흥원의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 조사, 만족도조사 등)
 - 사업중단·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항,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에 따름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이 진흥원 규정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 사업운영 매뉴얼을 따름
 - 기타 지원금 지급 불가항목
 - 증빙 서류가 불충분 함에도 제출기간 내 보완·소명되지 않은 지출금액
 - 기업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금액
 - 기업 명의 계좌로 처리 되지 않은 금액 (현금 및 카드 거래 불가)
 - 간이 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증빙 등 인정 불가
 - 후원금, 연체료, 위약금, 부가세 및 관세, 기타 수수료성 비용
 - 인건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식비, 회의비 등 해당 사업과 연관이 없는 금액
 - 특수관계자(직계비존속, 친척, 배우자, 이해관계자 등)와의 거래 금액
 - 신청대행사를 통한 사업 신청이 판명된 경우
 - 그 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센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금액
- ※ 지급 인정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대행업체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포함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업태/종목이 해당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함)	진흥원 양식
	2	○ 사업자등록증 (아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함께 제출) -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제출 필수	홈택스, 정부24 등
	3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주업종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진흥원 양식
	4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대표자, 담당자 등)	진흥원 양식
	5	○ 신청기업 협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진흥원 양식
	6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등
	7	해당 시 ○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 개인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등의 시 자동 제출	
해당 시	8	가점 서류 ○ 여성기업 : 중소기업부 여성기업확인서 ○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진흥원 입주계약서 ※ 비상주 입주기업은 가점 불가 ○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용인시 인증서 ※ 택 1, 중복 적용 불가	
필수 서류	9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0	○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1	○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2	○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13	해당 서류 제출 필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보험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격 상실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붙임 1.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2. [참고] 2026년 지원사업 공통 안내문(진흥원) 1부.